#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37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신영대·한준호·염태영

안도걸 • 송기헌 • 김기표

김윤덕 · 박희승 · 천하람

임광현 · 임오경 · 황 희

이학영 • 박수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청 정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세제지 원, 보조금,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정책수단을 경쟁적으로 동원하고 있 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압력이 커지 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짐.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해왔으나, 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 규정에 걸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일자리 기반을 지키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역시 포함하여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설비투자·연구개발·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 35 신설 등).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2호는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이 조 및 제144조의2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2029년 12월 31일"을 "203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제 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 액을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 2.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 어질 것
- 3.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다만, 해당 과세연도별 법인세가 해당 과세연도 공제 총액을 넘지못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한도를 정한다.
- 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 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은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 및 생산관련비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 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생산관련비용의 산정 및 보고, 재료비 중 국내제조부품·소재·원재료 재료비 비중의 산정,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투자세액공제액의 산정,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100조의35의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있다.

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제24조, 제 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유형 및 투자시점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중견기업

- 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50
- 나. 2027년 12월 31일 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70
- 다. 2029년 12월 31일 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100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 투자 기업(「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100분의 100. 다만,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업
  - 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30
  - 나. 2027년 12월 31일 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50
  - 다. 2029년 12월 31일 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70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

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구체적 산정방법 및 초기 투자 기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권은 제1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업유형 및투자시점별 비율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와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 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④ 제144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미 환급권을 양도한 자가 7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환급권을 양도받은 시점에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급권의 양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i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제2호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			
<u>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해			
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			
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 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1. (현행과 같음)
2
가

금액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 시험용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 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3) 4) (생 략) 나. • 다 (생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_
1) (현행과 같음)
2)
이 조 및 제144조의2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u>2035년</u>
<u>12월 31일</u>
3) · 4) (현행과 같음)
나.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
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
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 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 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 ·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1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재 화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 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

   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

   하여 제조될 것
- 2.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 3.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 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 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 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 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0 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과 세연도별 법인세가 해당 과세 연도 공제 총액을 넘지 못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한도를 정한다.

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 가상각비에 상당하는 투자세액 공제액은 제1항에 따라 공제받 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① (생략) <신 설>

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생산세액공제 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생산관 련비용의 산정 및 보고, 재료비 중 국내제조 부품・소재・원재 료 재료비 비중의 산정, 감가상 각비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액의 산정,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생산세액공제대상 생

산수량 및 생산관련비용을 보

① (현행과 같음)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 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 액공제와 제100조의35의 국가 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 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 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 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 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 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 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 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 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환급특례) ①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제24조,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업유형 및 투자시점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중견기업
  - <u>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u> <u>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u> 의 50
  - 나. 2027년 12월 31일 또는 2 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70
  - 다. 2029년 12월 31일 또는 2 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100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

   투자 기업(「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100분의 100. 다만, 20 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 투자분은 100분의 50 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업
   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
   의 30
  - 나. 2027년 12월 31일 또는 2 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50
  - 다. 2029년 12월 31일 또는 2 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 100분의 70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 청을 하여야 한다.
- <u>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u>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투자완료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본다.

-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 금액의 구체적 산정방법 및 초 기 투자 기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양도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권은 제1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업유형 및 투자시점별 비율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와 양도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따라야 한다.

④ 제144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정하는 경우, 이미환급권을 양도한 자가 7년 이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환급권을 양

도받은 시점에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급권의
 양

 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